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417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이동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4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